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7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298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1]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게 한 취득세 1,488,980원, 지방교육세 127,620원, 농어촌특별세 85,08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 후인 2023. 12. 1. 사임하였으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대리권이 있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판결서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표시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21. 6. 16. '1. 대한민국은 ○○○○○○시 C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 7. 1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5037), 위 판결은 2021. 7. 6.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1. 7.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1,488,980원, 지방교육세 127,620원, 농어촌특별세 85,08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0. 19.경 피고에게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D이 사망한 1973. 5. 5. 이전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단독으로 점유해 왔는바, 적어도 D이 사망한 1973. 5. 5.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5. 5.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3. 5. 5.로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1. 17.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는 관련 판결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로 기재된 2020. 7. 13.로 보인다.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감액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7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2.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1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D이 사망한 1973. 5. 5. 이전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단독으로 점유해 왔는바, 적어도 D이 사망한 1973. 5. 5.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5. 5.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만 원고는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점유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관련 판결에서 편의상 점유기산점을 2000. 7. 12.로 정했을 뿐이다. 원고가 D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마을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이 사건 토지에서 1991년경 농작물이 경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사진, 이 사건 토지의 제산세 고지서 일부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1973. 5. 5.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는 1973. 5. 5.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5. 5.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2021. 7. 21.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993. 5. 5.부터 피고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원고에게 전액 환급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7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 판결의 소장에도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D이 사망한 1973. 5. 5. 이전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단독으로 점유해 왔다'는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 7. 1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1973. 5. 5.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93. 5. 5.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